

한국 무속문화에 대한 고찰

박승권



민족출판사

한국 무속문화에 대한 고찰

박승권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巫俗文化考察: 朝鲜文 / 朴承权著. — 北京: 民族出版社,
2007. 7

ISBN 978-7-105-08454-8

I. 韩… II. 朴… III. 巫术—文化—研究—韩国—朝鲜语
IV. B993.126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7)第120740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7年7月第1版 2007年7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880毫米×1230毫米 1/32 印张: 8.125

字数: 213千字 定价: 23.00元

ISBN 978-7-105-08454-8 / B·356(朝1)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 1971년 5월생.

◇ 1992년 중앙민족대학 조선언어문학학부 졸업.

◇ 1995년 중앙민족대학 조선언어문학학부 조교로 취직하여 현재까지 주로 조선(한국) 문화, 조선(한국) 민속, 조선(한국)사 등과 과목을 강의함. 인류학 전공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함.

◇ 「전통(성)의 의미에 대한 연구」, 「중국의 스포츠 민족주의와 2002한-일월드컵」, 「조선의 무속과 중국 북방샤머니즘의 비교연구」 등 10여 편의 논문과 보고서가 있음.

◇ 200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중앙인민방송국 “내 고향 우리 겨레—성씨의 유래”프로 방송출연.

责任编辑 全春梅
责任校对 韩海燕
封面设计 金 一

한국 무속문화에 대한 고찰

머리말

한국이 세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88서울올림픽 이후의 일이다. 1992년 여름,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값싼 셋방을 찾아다니며 전전하던 어느날 점심 베이징라디오에서 공개방송되는 “서울의 찬가”를 들으면서 이제 중국과 한국이 수교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지가 벌써 열다섯 해가 된다. 그리고 중국 전 지역에서 한류의 붐이 일어난 지도 어언 십 년이 막 된다. 그런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에 대하여 생소하다. 베이징의 대형서점을 둘러보아도 한국과 관련된 서적들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한국 문화를 전공한 필자에게는 이와 같은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따라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일환으로 우선 현대 한국 전통문화 상징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 무속문화에 대한 이 글을 선보이려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현대 한국의 무속전통은 근대화 과정 중에 전승되어 오던 여러 전통 중 선택, 재창조된 것이라는 점이다. 즉 한국 근대사회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중국에서 말하는 비물질문화유산(非物質文化

遺産) 연구인 타산지석으로 한국의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정책 법안과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중 무속과 관련된 것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필자가 한국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와 촬영한 사진들을 위주로 한국의 굿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1997년 말 필자는 은사이신 황유복 선생님의 추천으로 한국재외동포재단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과정을 밟게 되었으며, 3년 남짓한 유학 기간에 평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 무속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시작하여 조금씩 모아진 자료들을 본고에 옮겼다. 본고의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한국의 무속과 중국 북방 여러 민족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머니즘에 대한 비교를 다루었다. 그것은 한 민족의 문화는 다른 민족들과의 비교를 통해야만이 그 특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문화공동체의 형성은 스스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의 교류와 영향 속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속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파악하면서 전통(성)의 재창조 이론을 바탕으로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 한국 사회에서 무속이 존재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필자의 인사 변동으로 수 삼 차 미루어진 원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접수하여 주신 민족출판사 조선문편집실에 감사드린다.

본고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밑거름으로 된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다. 많은 전문가와 학계 선생님들의 비판과 조언을 바라마지 않는다.

저자 박승권
2007년 중앙민족대학에서

圖書在版編目(CIP)數據

韓語文法 / 林文雄著. — 北京: 民族出版社, 2007.7

2007.7

ISBN 978-7-105-08454-8

I. 韓… II. 林… III. 語法—文法—研究—中國—朝鮮語

IV. B937.126

中國版本圖書館CIP數據核字(2007)第130410號

民族出版社 出版發行

(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mzcbs.com>

2007년 7월 제1판 2007년 7월 북경 제1차 인쇄

절지: 880mm×1230mm 1/32 전지: 8.125

자수: 213천자 값: 23.00원

ISBN 978-7-105-08454-8 / B·356(조1)

(편집실전화: 58130534; 발행부전화: 64211734)

차 례

제1장 한국의 무형문화재 정책과 현황	1
제2장 한국의 굿	65
1. 서울의 굿	65
2. 서해안 풍어제	73
3. 대전의 앓음굿	94
4. 진도의 진오귀굿	97
5. 경기도 도당굿	100
제3장 한민족의 무속과 중국 북방민족의 샤머니즘 비교	119
1. 무속과 샤머니즘의 역사	120
2. 무속과 샤머니즘 세계관의 비교	146
3. 서낭당과 오보	169
4. 작두타기와 칼사다리오르기	195
5. 당골과 씨족 샤먼	204
제4장 한국의 현대사회와 무속	211
1. 문화적인 배경	213
2.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무속문화	218
3. 전통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224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32

제1장 한국의 무형문화재 정책과 현황

1) 무형문화재 정책제도와 변천

한국에서의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보호되는 ‘지정문화재’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 중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보존이 필요한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된다. 비지정문화재는 매장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등 기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향토 유적·유물)를 가리킨다.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되어 이야기 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유형문화재는 경복궁이나 남대문과 같이 물리적인 형태를 갖춘 국보와 보물을 말한다. 기념물에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이 포함되는데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법률에 따라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학술상 가치가 높은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식물(자생지 포함)·광물·지질과 그 밖의 천연물들을 가리킨다.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원칙적으로는 현상 변경이 허락되지 않지만 동물과 식물은 죽거나 이동 가능한 것이

어서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민속자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 4호에 기초하면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이다. 1964년 12월 덕온공주당의(德溫公主唐衣)가 중요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다.

무형문화재는 연극이나 음악, 공예기술, 놀이와 같이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정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와 도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방무형문화재로 나눈다. 물론 유형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 등도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된다.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종묘제례악을 지정한 후 2004년 7월까지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 등 7분야 109종목이 지정되었다.

한국에서의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보호법령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본 법령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었다. 이로써 전통문화 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나 예능을 국가와 정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게 되었다.

‘문화재’란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 사용한 것은 1961년 10월 2일 문화재 관리국 직제 공포가 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 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일반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일제식민지 시기인 1916년 7월에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된 ‘고적급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이 조선총독부령 제52호로 공포된 적이 있으며, 그 후 1933년에 보다 체계적인 ‘조선보물고적명승기념물보존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다.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기초로 보완하여 제정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금방 벗어나고 또 한 차례의 세계적인 전쟁을 치러 나라가 피폐화된 상태에서 기존의 제도를 완전히 탈피한 정책이나 법규를 제정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물론 이는 당시의 문화재보호법을 위한 변명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 법규의 제정은 우선 정치적인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또한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행위로서 자기 사회와 문화적인 특성에 알맞은 법규를 마련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문적인 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1950년대와 1960년대는 한국의 민속학의 발전기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환(印權煥)은 민속학의 형성기를 1930년대로, 발전기를 1960년대로, 전환기를 1970년대로 보고 있다. 김태곤은 1920년대부터 1945년도를 민속학의 여명기로, 1945년도부터 1960년대까지를 중흥기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를 발전 및 혼동기로 보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를 정리기로 보고 있다. 이상의 두 민속학자는 모두 1960년대를 한국의 민속학이 재기하는 단계로 보고 있다. 법규의 제정에 있어서 필요한 학문적인 논증이나 바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이때에 와서 한국의 민속학은 점차 자립적인 학문 분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다.

1955년 8월에 한국민속학회가 설립된다. 이는 1946년에 발족되었던 전설학회를 전신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는 『민속학보』 제2집까지 출간한다. 1958년에는 한국문화인류학회가 설립된다. 1960년대까지 한국의 인류학과 민속학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한국문화인류학회의 대부분의 성원들은 민속학자들이었으며 이들의 연구주제 역시 무속, 민속신앙, 민속놀이, 전설, 신화, 농

정의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한국문화인류학회의 전신으로 1946년도에 설립되어 1949년도까지 존재하였던 조선인류학회의 주 멤버도 역시 대부분 민속학자들이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민속학 강좌가 설립되었다. 1954년 국학대학에서 최초로 민속학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1955년에는 숙명여대에, 1960년에 서울대에, 1961년에 경희대학에 각각 개설되어 민속학이 지속적인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민속학의 재기와 당시 국학에 대한 한국 사회적·문화적 지향은 문화재보호법에 한국적인 정신을 고양하는 정신문화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물론 물질문화와 같이 정신적인 문화의 발전을 보다 중요시 하였던 한국적인 전통과도 연결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무형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1958년부터 매년 실시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문화재관리국은 전국민속예술대회를 통해 13개 종목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또한 1968년 4월부터 인류학회로 하여금 전국민속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1969년 8월 전남지역편이 발간된다. 1970년에는 원래 종목만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하던 데로부터 해당 종목의 보유자를 정하여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보유자를 핵심으로 실행되는 현행제도의 기본 틀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가 의무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보유자는 전수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유자들의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의 고령화 추세를 보이면서 후계자 육성이 절박한 상태에서 비롯된 것

이라 하겠다. 이와 상응하여 1974년부터 무형문화재 전수생들의 교육과 사회적인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전수교육관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각 지역에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 전역에 모두 14개의 시와 도시에 97개소의 전수교육관이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형문화재 정책은 보유자들의 고령화와 세대교체의 현실에 직면하면서 기존의 전승 중심 정책에서 보급중심 정책으로 전환한다. 무형문화재에 책정된 내용들이 대부분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민속이고 한국 사회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상당히 도시화되어 있는 현실 상황에서 상기의 무형문화재가 소수 인들에 한해 박물관 식으로 보존되기보다는 국민들의 생활에 반영되어 생활화 하여야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996년부터 기존의 소수의 전수 장학생을 선발하여 전승자를 육성하던 정책을 바꾸어 보유자에게 더 권한을 주어 보유자가 자율적으로 전수생의 선발과 이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4년 10월까지 1,000명이 넘는 이들이 이수자로 공인 받아 공예작품 제작과 공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 한국의 무형문화재 관련 법령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1) 법제처 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klaw.go.kr> 에 게재된 '전부개정 2007. 4. 11 법률 제8346호 문화재보호법'을 참고하여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법령만 선제하였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1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문화재위원회 설치)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 반출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문화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6조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1.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2.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를 인정하여야 한다.

3.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4. 문화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